

電子文書交換의 標準化와 交換約定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Interchange Agreements

文 熙 哲*

- I. 序 論
- II. EDI의 標準化에 관한 基礎概念
 - 1. EDI의 構成要素
 - 2. EDI의 標準化에 관한 接近方法
- III. EDI의 國際的 標準化에 따른 問題點
 - 1. 技術的 問題點
 - 2. 實務的 問題點
 - 3. 法的 問題點
- IV. EDI 交換約定
 - 1. 交換約定의 意義
 - 2. 交換約定의 種類
 - 3. 交換約定의 內容
- V. 結 論

I. 序 論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없는 업무처리방식이 기존의 종이서류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내는 물론 무역분야에서도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¹⁾ 이러한 무역자동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電子文書交換(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이다.

* 忠南大學校 貿易學科 助敎授

1) 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자동화 및 EDI설명회 자료, 1994.3

EDI란 표준화된 기업간 거래서식(주문서, 송장 등) 또는 기업과 행정관청간의 행정서식(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등)을 합의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교환, 축적, 처리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²⁾ 흔히 EDI는 또다른 전자통신방식인 모사전송(FAX)이나 전자메일(E-Mail)과 혼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해 전송된 자료는 구조화된 것이 아니어서 재입력없이 가공될 수 없으며, 따라서 EDI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점을 기대할 수 없다.³⁾

EDI를 통한 무역자동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EDI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電子文書와 그의 通信方法에 대한 國際的 標準化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電子書類의 法的 效力 및 證據能力의 認定이나 EDI거래당사자간의 責任問題 등에 대한 制度나 合意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무역자동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제도의 개선, 유통되는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의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I와 관련된 國內外的 研究動向을 살펴보면 무역자동화의 선결요건으로서 EDI의 標準化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점과 함께 EDI를 실제 무역거래에 적용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실무적 및 법적 문제점까지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연구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DI의 표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과 그의 해결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EDI 거래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EDI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EDI의 標準化에 관한 基礎概念

1. EDI의 構成要素

일반적으로 EDI의 구성요소라 하면 전자문서와 통신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EDI 표준(standard), 전자문서를 전송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사용자 시스템(user system), 그리고 사용

2) 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 "전자자료교환(EDI)과 UN/EDIFACT," 1990, p.5.

3) Margaret A. Emmelhainz, *Electronic Data Intechange: A Total Management Guide*, 2nd ed., Van Nostrand, New York, 1993, p 12.

자간에 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네트워크인 서비스제공업자(service provider) 내지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EDI는 단순한 기업내부의 업무처리의 전산화 내지는 자동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업무처리시스템을 가진 거래상대방과의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이다. 따라서 EDI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EDI로 처리할 전자문서 및 적용표준, 시스템운영, 오류 또는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을 규정한 EDI 거래당사자간 약정(EDI Trading Partner Agreement)도 EDI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EDI의 標準化에 관한 接近方法

EDI를 활용한 무역자동화의 급속한 진전을 위해서는 EDI의 표준화에 관한 체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산업정보화추진센터에서는 EDI표준화에 관한 접근방법을 <도표 1>과 같이 4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⁴⁾

<도표 1> EDI표준화의 수준

제4수준	거래기분규약	EDI 관련법규(VAN을 통한 일괄계약)	-----	법제도
제3수준	업무운용규약	업무처리약정(당사자간의 계약)	-----	규칙
제2수준	정보표현규약	정보표현형식(협회의 Business Protocol)	--	규격
제1수준	정보전달규약	정보통신시스템(ISO의 7계층 참조모델)	----	규격

자료: 한국전산원, EDI표준화에 관한 연구, 1991.12, p.69에서 적의수정함.

이러한 분류방법은 日本 通商産業省의 1990년 중간보고서에서도 앞으로의 EDI표준화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내용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분류에 의하면 UN/EDIFACT 같은 메시지표준에 해당하는 협회의 Business Protocol은 제2수준 정보표현규약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ISO의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통신표준은 정보전달규약으로서 제1수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제3수준과 제4수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알기 쉽다. 기업간에 제3수준 및 제4

4) 한국전산원, 전게서, pp.68-69.

수준의 규약에 관한 조정을 할 때, 사내의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면서 시스템담당자나 업무처리담당자의 범위내에서 규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제3수준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4수준이다.⁵⁾

이와 같이 제3수준과 제4수준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EDI실행규칙이라는 측면에서 시스템운용에 관한 규약과 업무운용에 관한 규약을 포함하는 EDI거래당사자약정(EDI Trading Partner Agreement)이 제3수준에 해당한다면, 거래기본규약에 관한 법제도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UNCID가 제4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의 구조에 대해서는 ISO에서도 EDI표준의 개념적 모델로서 1989년부터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ISO모델에서는 법 또는 제도를 나타내는 제4수준과 규칙을 나타내는 제3수준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다. 이는 ISO모델이 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EDI표준화모델의 효용성은 각 수준의 표준화에 대한 검토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이러한 모델이 없다면 통신시스템에서 표준메시지, 나아가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만이 표준화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EDI의 표준화 노력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제1수준과 제2수준 사이에는 회색지대(Grey Zone)라고 할 수 있는 분류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자봉투(electronic enveloping)나 송수신확인을 위한 자료항목의 존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EDI표준화의 개념적 모델은 이제 막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낸 관계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상관습 및 법제도의 변화에 맞는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EDI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크게 기술적 문제점과 실무적 문제점 및 법적 문제점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II. EDI의 國際的 標準化에 따른 問題點

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DI연구협의회, 「EDI 월드」, 제7호(1993년 봄호), pp 65-66

1. 技術的 問題點

(1) 技術적 問題點에 관한 고려사항

현재 통신표준은 세계적으로 몇가지의 경쟁적이고 보완적인 통신규약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UN산하의 통신관련 국제기구인 CCITT(Consultativ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가 서로 다른 컴퓨터를 보유한 개방시스템간 상호 접속(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X.400 계열의 통신규약들과 IBM의 SNA(System Network Architecture)이다. 이밖에도 EDI와 관련된 통신표준들은 PSDN 또는 PSTN 등을 이용한 데이터통신표준, 모뎀과 같은 데이터통신 하드웨어장비에 관한 V.Series 표준 등 다양하다.⁶⁾

이러한 통신표준들은 한결같이 통일적으로 합의되고 구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전혀 상이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동일사양으로 이루어진 완전히 표준화된 모델들도 공급선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동되거나,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신표준의 미비로 인한 기술적 문제점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EDI시스템을 가진 사용자간의 상호접속 문제, 자료의 보안(data security) 및 시스템의 통제문제이다. 그러나 상호접속 문제는 VAN사업자의 존재로 기술적으로 그다지 커다란 어려움은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ED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기업의 컴퓨터시스템 및 통신망과 그 기업과 문서를 송수신하거나 중계해주는 EDI사업자의 신뢰성또는 보안성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전문가 범죄, 산업스파이 행위, 컴퓨터바이러스 등과 인간의 단순한 실수만으로도 EDI시스템은 커다란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국제적인 EDI표준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보안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EDI메세지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변조나 유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자문서의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⁷⁾

① 認證(Authentication): 인가되지 않은 제3자가 수신자 또는 송신자로 위장하여 정보를 도

6)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태윤, 전자거래정보교환(EDI), 집문당, 1991 참조

7) 정동길, "전자식자료교환(EDI)시스템의 표준화 방안," 전산망기술 및 표준화 심포지움, 한국전산원, 1992.6, p.262.

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② 秘密維持(Confidentiality) 송수신되는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의 누설, 정보의 고의적 조작, 정보의 고의적 대체, 정보의 분실을 막아야 한다.
- ③ 資料의 完全性(Integrity of the Data): 전달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의 부분적 누락, 정보의 분실, 정보의 변경, 정보의 중복을 막아야 한다.
- ④ 否認封鎖(Non-Repudiation): 정보의 송신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과 정보의 수신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⑤ 電子文書交換 서비스 接近統制(Access Control):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접근을 통제하고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電子文書交換 서비스의 可用性(Availability of the EDI Service) : 전자문서교환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DI거래당사자들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자료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문제에 따른 위험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에 의한 기존의 국제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EDI거래에 있어서도 거래당사자들의 일방이나 제3자에 의한 자료의 변조나 송수신사실의 부인 등 詐欺의 위험, 정보전달의 지연이나 부정확한 정보전달에 따른 피해, EDI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예견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통신서비스제공업자와 사전에 자료교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交換約定(Interchange Agreement) 또는 通信約定(Communication Agreement)이라고 한다.⁸⁾ 이와 같은 약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은 제1수준 또는 제2수준의 정보전달규약이나 정보표현규약의 표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제3수준 또는 제4수준의 규칙 또는 법제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환약정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을 달리하여 좀더 상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2. 實務的 問題點

8) 이때 EDI거래상대방과의 약정을 EDI Trading Partner Agreement라고 하며, 서비스제공업자와의 약정을 Service Agreement 또는 Network Agreement라고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EDI의 표준화에 관한 개념적 모형에서 제2수준의 정보표현규약의 표준화는 제1수준의 정보 전달규약의 표준화에 비해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메시지표준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술적 문제와 실무적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측면에만 초점이 모아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EDI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표준화의 진척이 미진하고, EDI를 구현하고 있는 일부 선도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專用標準은 동종 산업내의 다른 기업들과도 통용이 어려운 실정이다.⁹⁾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산업의 사무환경을 고려한 전자문서 표준화노력의 결과가 국제표준인 UN/EDIFACT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이 UN/EDIFACT를 메시지표준으로 채택하여 무역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실무적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행 상관습이 EDI를 활용한 무역자동화에 따른 거래관행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무역실무절차 전반에 걸친 표준메시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용장의 네고 등 많은 경우 EDI에 의한 전자문서의 송달과 종이문서의 제출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실무 현실에서는 업무처리의 개선이나 비용절감 등 무역자동화의 기대효과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둘째는 복잡한 무역실무절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무역자동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역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EDI방식의 무역거래시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무역실무절차 때문에 전체 무역업무를 뒷받침할 EDI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UN/EDIFACT와 같은 국제표준의 채택시 이러한 범용표준에는 특정기업의 입장에서 필요없는 부분도 들어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송료가 필요 이상으로 들 수도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간 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EDIFACT표준원 등의 무역자동화 관련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 데이콤, 그룹VAN 등의 VAN 사업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공급업체 등은 한결같이 무역자동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통해 무역자동화

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DI연구협의회, 「EDI 월드」, 제7호(1993년 봄호), p.68

내지 EDI의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EDI를 도입하여 무역자동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실무적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法的 問題點

(1) 概要

EDI에 의한 무역자동화의 특성은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기존의 종이서류가 갖는 법률적 기능과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EDI에 의한 무역자동화는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종이서류는 보통 3가지의 기능, 즉 정보적 기능(informative function), 증거적 기능(evidential function),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을 갖는다.¹⁰⁾ 예를 들어 대표적인 무역서류인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운송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權原證券(document of title)으로서 선하증권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이러한 3가지 기능과 관련하여 잠재적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거의 모든 거래에서 아직은 서면에 의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의 법률이나 제도가 서면에 의한 서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종이서류의 전자서류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肯定論과 懷疑論이 양립하여 왔다.¹²⁾ 이러한 논의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를 국제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무역관련기관이나 업계의 노력으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데 따른 기술적 및 실무적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자문서를 규율할 통일된 국제무역법규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나 제도가 EDI의 발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 법제도는 영미법체계에서 잘 나타나듯이 오랜 시간을 두고 정착된 상관습을 사후에 수용하는 형식으로 서서히 변화한

10)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Paperless Transaction," *Journal of Business Law*, Mar. 1989, p.105.

11) 송계의, "EDI거래의 법률적인 문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93 8, p.11.

12) 김안식, 「신무역제도론」, 법문사, 1993, pp.256-317.

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사후에 반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EDI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및 실무적 차원의 노력을 제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EDI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표준화를 위해서는 우선 EDI의 국제적 표준화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예상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종이서류의 기능과 EDI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류없는 무역으로의 이행을 위해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증거적 문제, 계약적 문제,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 證據的 問題

證據法과 관련하여 국제거래에 EDI를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법률적 문제가 내제되어 있다. EDI에 의해 제기되는 법률적 문제는 크게 다음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¹³⁾

①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 또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가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受容 問題(admissibility question)

② 컴퓨터로 이루어진 통신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가의 認證問題(authentication question)

③ EDI 메시지가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서면(writing) 또는 서명(signature)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形式性 問題(formal question)

먼저 법정증거로서의 수용문제와 관련하여 UNCITRAL의 “컴퓨터의 법률적 가치”에 관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증거로서 컴퓨터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통신을 증거자료로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 實例로 영국의 민사증거법(Civil Evidence Act 1968)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두고는 있지만, 민사소송절차에서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문서에 담긴 진술도 특정 사실의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컴퓨터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¹⁵⁾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

13) Rob Bradgate, “Evidential Issues of EDI,” in Ian Walden(ed.), *EDI and the Law*, Blenheim Online, London, 1989, pp.10-11.

14) UNCITRAL, “Legal Value of the Computer,”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A/CN.9/265, Feb. 21, 1985, p.21

15) King v Murdock Acceptance Corp, 222 So. 2d 393(1969)

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전자문서의 형식이 보통의 문서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이문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면, 전자문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NCITRAL의 보고서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전자통신문을 증거로 수용하는 데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종이문서의 증거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에서 별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認證問題는 앞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언급한 전자문서의 완전성 내지 정확성 및 자료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인증문제는 전자수단에 의한 서명도 전통적인 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形式性의 문제도 동시에 야기하게 된다.

정보전달매체로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보다 뛰어난 정보기능을 지닌다. 즉, EDI에 의한 전자문서는 종이서류에 비해 신속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보다 빠르게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하며, 물품인도와 대금결제를 앞당길 수 있고, 移記(transcription)에 따른 오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추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작업에 의해 종이에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오랫동안 기록을 유지 및 저장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인증문제는 결국 전자문서가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수준의 완전성과 자료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가로 집약된다. 이와 관련하여 英國의 資料保護法(Data Protection Act 1984) 제12조에서는 전자문서의 전송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지닌 자의 權利侵害(infringement)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외로의 문서전송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⁷⁾ 무역자동화촉진법 제18조에는 누구든지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다.

또한 UN/EDIFACT표준의 일환으로 마련된 무역자료의 전송교환에 관한 통일규칙(UNCID)에서도 상대적으로 증거문제에 관한 조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료보안을 위해서 법률적 노력이 강구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규칙이나 통일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제통일규칙이 마련되

16) I. Walden and N. Savage, *op. cit.*, p 104.

17) Ian Walden &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Paperless Transaction," *Journal of Business Law*, Mar 1989, p.105.

기 까지는 주로 EDI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존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문서가 EDI의 사용에 있어서 증거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보다 심각한 장해요인은 종이형태의 서류와 서명을 요구하는 형식성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아직도 많은 나라의 세관에서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 검역증명서나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된 문서를 요구하고 있는 법규정은 이밖에도 많이 있다. 무역자동화의 관점에서 특히 이러한 형식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선하증권과 환어음의 경우이다. 이들 서류는 權原證券 또는 有價證券으로 流通性을 지닌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먼저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하터법(Harter Act)과 해상운송법(COGSA)은 운송인에게 하주의 요구에 따라 종이서류 형태의 선하증권을 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¹⁸⁾ 또한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국내법에 의해 선하증권을 비롯한 서류에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명백히 EDI와 양립할 수 없다.

선하증권의 전자문서화, 즉 전자식 선하증권으로 변환시키는데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점은 선하증권이 갖는 상징적 기능인 권원증권(document of title) 혹은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 은행과의 화환취결에 따른 담보기능(security)과 서류의 이전에 의한 전매 기능(resale)을 데이터의 전자적 이전에 의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¹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CMI(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통일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이다. 동 규칙은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의 관련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CMI통일규칙하에서는 전자식 선하증권에 대해서도 권원증권 또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운송인으로 부터 私設키(private key)를 부여 받은 소지인의 지시에 의해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점은 누가 이러한 사실기 등록기관의 역할을 맡을 것인가와 사실기가 등록기관의 확인도 없이 다른 제3자에게 詐欺로 이전될 가능성이다.

환어음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적용된다. 영국의 환어음법(Bills of Exchange Act

18) George F. Chandler, III,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Bills of Lading,"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20, No.4, Oct. 1989, p.575.

19) 한성일, "전자적 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한국해운학회지」, 제15호, 1992, pp.83-109.

1882)에서는 환어음의 서면성과 서명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통성을 지니는 신용수단으로서 환어음의 상업적 가치는 바로 배서와 양도에 의해 所持人と 전단계의 背書人 사이에 일련의 계약관계가 생성되고 이를 토대로 환어음에 화체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이 유통성 유가증권으로서 전자식 선하증권으로의 이행이 기술적 및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활용하여 전자자금이체를 수행해온 은행들의 EDI역량에 비추어 전자식 환어음도 충분히 국제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契約問題

EDI거래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계약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립하였는가 하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고,²⁰⁾ 둘째는 계약의 성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인증의 문제이다.

첫째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시기와 장소 및 형식 등의 계약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國際商學 내지 國際物品買賣論 고유의 분야로 인식되어 집중적인 연구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계약의 성립시기와 장소는 계약의 효력이나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이를 성립시키기 위한 일방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성립하므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와 장소가 계약성립시기와 장소가 된다. EDI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사자들이 원격지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즉시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통신수단인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의 경우와 같이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와 장소에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자문서는 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모든 EDI거래에 일률적으로

20) C J. Millard, "Contractual Issues of EDI," in Ian Walden(ed.), *EDI and the Law*, Blenheim Online, London, 1989, pp 43-48

21) 송계희, 전계논문, 1993.7, pp.12-17.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은 EDI거래약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사전에 명백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捺印證書의 交付나 約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영미법체계와는 달리 近代契約法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계약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당해 계약이 추후 분쟁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양당사자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존중하는 것과 EDI거래에서 전자문서의 인증 또는 전자서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法律的 責任

EDI네트워크 내에서는 통상 2가지 중요한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서비스 공급업자와 사용자간, 그리고 사용자간의 約定이다. 이를 토대로 EDI로 문서를 전송중에 메시지의 변경 혹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법률적 책임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형태의 통신시스템이던 간에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정보를 변조하거나 우발적으로 정보가 謬傳 또는 상실될 가능성은 있기 마련이다.²²⁾ 이러한 결함의 원인이 전용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의 결점인 경우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VAN사업자는 이러한 손해배상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법에서 이러한 손해배상한도에 관한 제한은 不公正契約條件法(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의 지배를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전달에 따르는 책임문제를 규율할 정교한 규칙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적인 통일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EDI 거래당사자들은 이를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IV. EDI 交換約定

22) S Mosteshar, "Liability Issues of EDI," in Ian Walden(ed.), *EDI and the Law*, Blenheim Online, London, 1989, pp.49-55.

1. 交換約定의 意義

이상에서 살펴본 기술적 문제, 실무적 문제, 법적 문제는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거나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EDI에 따른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DI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노력에 비추어 EDI거래에서 야기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개 5가지 정도의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²³⁾

첫째, 가장 급진적인 방법으로 EDI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린 세계 최초의 것이다. 동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효력 및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법적 근거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기존 법률규범을 수정하는 형태로 EDI를 수용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일부를 이미 개정하거나 곧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는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을 개정중에 있고, 프랑스에서는 관련법규를 전자문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EC 등도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EDI 거래의 법률적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무역법규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미 국제상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다. 이는 EDI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ncoterms, 1990이 개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제거래에서 전자문서교환방식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무역거래조건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Incoterms, 1990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통성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그에 상응하는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원래 1983년의 제4

23) Rob Van Esch, "Interchange Agreement," *The EDI Law Review*, Vol.1, 1994, pp 3-41.

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제22조 c)항에서는 자동시스템이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카본 복사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도 수리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전자서명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1993년 제5차개정에서는 EDI방식에 의한 서류에 대비하여 원본서류란 '원본'이라는 표시와 함께 필요한 경우 육필서명, 팩스, 천공, 스탬프, 도장과 같은 상징(symbol), 기계 또는 전자방식 등의 인증에 의한 서명이 있으면 은행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제37조 a)항에 상업송장에는 서명이 필요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컴퓨터나 EDI방식으로 송장을 발급하는 것이 보편화 될 것이므로 서명 대신 다른 방법으로 진본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도입될 것을 예상한 조항으로 보여진다.²⁴⁾

셋째, 법원의 신중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까지 EDI거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閉鎖利用者集團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법과 사법 어느 경우에도 관련판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EDI거래에 있어서도 현재 국제상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ICC의 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형태의 국제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도 어느날 아침부터 국제상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많은 국제무역당사자들이 채택하여 활용하는 가운데 그 편리함을 인정받은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利點때문에 EDI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 널리 수용될 수 있는 통일규칙이 마련될 기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ICC가 ECE와 IS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제정한 무역데이터의 전송교환통일규칙(UNCID)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UNCITRAL에서도 독자적으로 국제무역에서 EDI를 사용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모델법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

그러나 여기에도 제약은 있다. 하나는 기존법과의 상충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EDI거래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에 그치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방법은 기술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의 해결을 당사자들간의 자율적인 약

24)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4, p.329.

25) Rob Van Esch, *op. cit.*, p.6.

정에 맡기는 것이다. EDI사용자들이 임의로 EDI거래에 관한 합의를 마련하는 구체적 방법에는 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계약의 일반거래조건에 EDI규정을 삽입하거나, ② UNCID와 같은 규정에 따를 것을 請約과 承諾時 또는 一般去來條件에서 합의하거나, ③ 최근 몇년간 보편화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본거래약정과 별도의 교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실제로 당초 UNCID 초안이 마련된 취지도 당사자간의 EDI교환약정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었으나, 다양한 사용자그룹의 서로 다른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UNCID의 목적은 기존 법률에 EDI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거나, EDI를 특별히 다루는 법률이 제정되어질 때까지 “다리를 놓는 역할(bridging operation)”을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²⁶⁾

과거에는 교환약정이 그다지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아직 많은 당사자들이 EDI의 도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미 EDI를 도입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상호신뢰속에 오랜동안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굳이 교환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EDI의 역사가 짧아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나 관련사례 등이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EDI실행을 위한 검토작업에서 거래약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⁷⁾

그러나 기술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환약정의 편리함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최근에는 그 활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 그 자체가 메시지표준이나 通信標準처럼 표준화 및 국제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BA(American Bar Association), 영국의 EDI협회를 비롯하여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관련단체들은 모델약정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²⁸⁾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과 EDI에 의한 무역 거래시에는 이들이 요구하는 모델약정을 사용하여 EDI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EDIFACT위원회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업무처리약정”을 마련하여 보급에 나서고 있다.

EDI거래를 규율할 국제무역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EDI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표준화된 교환약정이 지니는 의미는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환약정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각국의 관련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약정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26) 김태윤, 「전자거래정보교환(EDI)」, 집문당, 1991, p.268.

27) Ian Walden, “EDI: Establishing Legal Security,” ‘9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I, November 1991, CCPAK.

28) A.H. Boss and J.B. Ritte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greements: A Guide and Sourcebook*, Paris, ICC, 1993.

2. 交換約定의 種類

교환약정은 EDI상대방이 누구인가와 그 체결방식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교환약정은 EDI거래상대방과의 약정인 EDI Trading Partner Agreement와 서비스제공업자와의 약정인 Service Agreement 또는 Network Agreement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협의의 교환약정은 일반적으로 전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형태로 서비스제공업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EDI사용자들에게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EDI사용자들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도 협의의 교환약정인 EDI거래상대방과의 약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교환약정은 체결방식에 따라 雙務約定과 多者間約定의 2가지로 구분된다. 多者間約定은 集團約定으로도 불리운다.²⁹⁾

쌍무약정은 몇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쌍무약정의 경우 관련기업들은 거래상대방의 숫자만큼의 많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별로 약정의 내용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면 이러한 계약의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면에 일반거래조건이 인쇄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델약정을 마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도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반드시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약정은 특정한 EDI시스템에 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똑같은 교환약정에 근거하여 EDI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EDI시스템내의 이용자들의 숫자가 가변적일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약정관리를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교환약정에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가입조건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독점금지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수의 EDI사용자들로 구성된 폐쇄사용자집단에서는 쌍무약정의 체결도 가능하다. 그러나 EDI사용자들의 숫자가 많고 모든 EDI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이 아닌 개방시스템에서는 쌍무약정보다는 집단약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9) Rob Van Esch, *op. cit.*, pp 8-9

3. 交換約定의 內容

EDI거래에 따른 기술적, 실무적 및 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환약정에는 본문 및 부록을 통틀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모델약정들은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³⁰⁾

첫째는 기술적 측면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주요용어의 정의,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및 통신표준에 대한 합의, 해당업무별 사용자 명시 및 수발신인확정, 서비스제공업자 및 데이터 통신망, 사고발생시 업무처리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보안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서 시스템, 메시지, 교환절차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인증과 전자서명의 방법, 접수확인, 내용통지, 무역자료기록집(trade data log)의 유지와 보관 등이다.

셋째는 실무 내지 계약적 측면에 관한 규정이다. 서비스 이용요금 등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 계약의 성립, 변경 및 해지, 양도 및 지위승계, 약정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법률문제를 다루기 위한 규정이다. 전자문서의 효력, 기밀유지, 손해배상과 면책조항 등 책임문제, 준거법, 분쟁해결 등이 법률적 측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규정들이다.

4. 交換約定의 問題點

현재 각국의 EDI관련기관들이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는 모델약정들은 대부분의 제정기관들 스스로도 하나의 초안에 불과함을 시인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환약정이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³¹⁾

첫째, 교환약정은 사적인 당사자들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이를 규율할 기존 법체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환약정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을 지니게 되며, 상거래에서 EDI실행에 따른 법률적 장벽이 존재하는 한 적절한 교환약정을 맺지 못한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법률적 장벽이 여전히 남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적 거래당사자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저촉이 되는 경우 교환약정은 효력을 발휘

30) 자세한 내용은 A.H. Boss and J.B. Ritter, *op. cit.*, pp 131-243을 참조할 것.

31) *Ibid.*, 122-124

할 수 없다.

둘째 교환약정은 모든 거래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특정한 교환약정의 일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협상시간의 부족, 단순한 無知 등으로 양당사자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모델약정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EDI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영국의 EDI협회에서 제정한 모델약정은 분쟁해결을 영국법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하에서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EDI사용자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국제상사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교환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의 결여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교환약정은 제3자인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인과의 교환약정이 선하증권에 의해 화물을 청구하는 하위구매자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거래비용이다. 다른 모든 약정과 마찬가지로 교환약정의 협상과 체결 및 실행에는 거래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일련의 정치한 규정들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거래의 효력과 실행가능성을 확립하고 전자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규범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있는 모델약정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각국의 EDI관련기관들이 모델약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EDI에 관한 통일된 국제 무역규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V. 結 論

아직 先進國에 비해 EDI의 도입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EDI를 이용한 貿易業務自動化的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의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EDI를 이용한 무역업무자동화는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이고 개별적 추진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無限競爭時代로 요약되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비추어 시장개방 압력과 원화절상 및 고임금 등에 따른 國際競爭力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시바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동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DI의 표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실무적 및 법적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EDI교환약정의 의의와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EDI 또는 무역자동화에 관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고, EDI의 실행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관련사례 등이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EDI와 무역자동화에 관해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EDI에 의한 무역자동화에 따른 國際商慣習이나 國際貿易法規의 변천과정이나, 기업의 국제화전략의 차원에서 무역자동화의 도입방안 및 성과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등은 연구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EDI의 국제적 표준화에 따르는 기술적, 실무적 및 법적 문제점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내지 이론적 차원에서 EDI에 관한 새로운 法理를 개발하는 것 역시 학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EDI거래에서 제3자 통신망의 역할은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역할에 비견될 수 있다. 따라서 EDI 사용자들과 제3자 통신망간에 책임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EDI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사례가 축적되고 관련법령이 정비될 경우 충분히 가치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參 考 文 獻 〉

〈 國 文 〉

- 김안식, 「신무역제도론」, 법문사, 1993.
- 김태윤, 「전자거래정보교환(EDI)」, 집문당, 1991.
- 문희철, “무역자동화를 위한 EDI의 국제적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학술발표대회는
문집, 1994.7, pp.171-202.
- 박대위, 「국제무역법규」, 박영사, 1993.
-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4.
- 송계의, “EDI거래의 법률적인 문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93.6/8.
- 안중호, 「경영과 정보통신기술」, 학현사, 1993.
- 오호근, 「EDI란 무엇인가」, 크라운출판사, 1993.
- 임승택, 「EDI혁명으로 가는 길」, 컴퓨터월드출판부, 1992.
- 정동길, 「전자식 자료교환시스템의 표준화 방안」, 전산망 기술 및 표준화 심포지움, 한국전산원,
1992. 6.
- 정상직, 「무역사무자동화론」, 형설출판사, 1993.
- 정찬모, “EDI를 이용한 무역업무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
교 경제정책대학원, 1992.
- 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 “전자자료교환(EDI)과 UN/EDIFACT,” 1990.
- 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 “UN/EDIFACT의 최근 동향,” 1991.
- 최창원, 김태윤, “기업간 정보통신의 신기술: EDI시스템개발,” 「경영과학」, 제10권 제1호,
1993.6.
- 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규집」, 1994.1.
- 한국전산원, 「EDI표준화에 관한 연구」, 1991.1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DI연구협의회, 「EDI 월드」, 각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DI표준화 연구」, 한국통신, 1993.1.
- 한성일, 전자적 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한국해운학회지」, 제15호, 1992,
pp.83-109.
- 해운산업연구원, 「물류EDI네트워크 기본설계」, 1992.

〈英文〉

- Boss, A.H., and J.B. Ritte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greements: A Guide and Sourcebook*, Paris, ICC, 1993.
- Chandler, George F. III,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Bills of Lading,"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20, N0.4, Oct. 1989, pp.571-579.
- Emmelhainz, Magaret A., *Electronic Data Intechange: A Total Management Guide*, 2nd ed., Van Nostrand, New York, 1993.
- Gifkin, Mike and David Hitchcock(eds.), *The EDI Handbook*, Blenheim Online Publications, 1988.
- Gifkin, Mike(ed.), *EDI Technology*, Blenheim Online Publications, 1989.
- Hemley, Eugene A., "Negotiable Electronic Bills of Lading," *Global Trade*, May 1991, pp.36-41.
- Gronfors, Kurt, "The Paperless Transfer of Transfort Infomation and Legal Fuctions," in C.M. Schmitthoff and R.M. Goode(eds.),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Some Legal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Center for Commercial Law Studies, 1988, p.23.
- Marcella, Jr., Albert J., and Sally Chan, *EDI Security, Control, and Audit*, Artech House, London, 1993.
- Sarich, A., *Electronic Data Intechange and Paperless Trade*, Blenheim Online Publications, 1990.
- Schmitthoff, Clive, M., *Export Trade*, 8th ed., Stevens & Sons, London, 1990.
- Van Esch, Rob, "Interchange Agreement," *The EDI Law Review*, Vol.1, 1994, pp.3-41.
- Walden, Ian and A. Braganza, *EDI: Audit and Control*, NCC Blackwell, Oxford, 1993.
- Walden, Ia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Paperless Transaction," *Journal of Business Law*, March 1989, pp.102-112.
- Wright, Benjamin, "Legal Issues Impacting EDI: Electronic Data Inerchange Trading Partner Agreements," TDCC: Th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ssociation. 1988.